

여성가족부령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연 월 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소개하려는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의 정보를 사업장 표시·광고에 활용하는 것을 개선하고,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시 자본금 산정과 관련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대차대조표로 변경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국제결혼중개업 관련 교육에 다문화 수용성 증진을 위한 과목·내용·시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범위”에 소개하려는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 사진·영상 등을 통하여 표시·광고에 활용하는 행위 규제(안 별표 1)
- 나.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시 필요한 자본금(1억원 이상) 산정을 위해 재산목록을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한 대차대조표로 대체(안 별지 제1호, 제5호의 2 서식)
- 다. 범죄경력조회 신청서·회신서 아동학대 범죄회신 범위 현행화(안 별지 제8호의 2, 제8호의 3서식)
- 라. 결혼중개업 공시에 사업장 등록·신고일, 업체상태(영업, 휴업, 폐업), 최근 3년이내의 과태료 부과내역 등 추가(안 별지 제7호의 2 서식)
- 마. 국제결혼 중개업자 및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에 다문화 수용성 제고(안 별표 3, 안 별표 4)
- 바. 시행령 제2조 제1호 개정(안)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 등록관련 조항 정비 (안 제4조 제1항 제5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결과 :

3) 행정규제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의 “법 제24조”를 “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2조제1호”로 한다.

제4조제1항제6호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자본금”으로, 후단의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재산목록”을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명서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6호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자본금”으로 “별지 제5호의2 서식에 따른 재산목록”을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명서류)”로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의 범죄경력 조회신청서 조회대상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한다)란 제3호에 다음을 추가한다.

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 각목 및 제59조에
 규정된 범죄경력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조회내용(실효된 형을 포함)란 제3호 아동학대란에
 다음을 추가한다.

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 각목 및 제59조에
 규정된 범죄경력

※ 관할 경찰서 관리시스템 조회자료에 따름

제6조의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결혼중개업체 현황 : 상호명, 대표자 성명 또는 법인명, 신고·등록일자,
업체상태(영업, 휴업, 폐업), 소재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
명까지로 한다.)

제6조의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최근 3년 이내의 과태료부과,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현황 : 처분일자
 및 처분내용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공시내용 목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연 번	상호명	신고등록일	업체상태 (영업, 휴업, 폐업)	대표자 성명 또는 법인명	소재지 (도로명까지)	최근 3년 이내의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이상 처분현황		
						부과/처분일자	부과/처분내용	비 고

별지 제7호의2서식의 표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부과/처분내용 : 과태료 부과 ○월 ○일, 영업정지 ○월 ○일 등으로 기재

별표 1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소개하려는 상대방의 얼굴사진, 키, 몸무게 등 사진·영상 등을 활용한 표시·광고

별표 3호 서식의 교육과목, 교육내용, 시간란에 다음과 같이 한다.

교육과목	교육내용	방법	시간
<u>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u>	· 다문화사회로의 전환 및 다문화수용성 제고	강의	1
<u>직업윤리 및 인권보호</u>	· 국제결혼 당사국의 문화이해	강의	2
<u>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보호 방안</u>	· 결혼중개업의 사회적 책임 및 직업윤리		
	· 성인지감수성 및 인권보호교육		
	· 소비자 보호관계 법규 해설	강의	1
	· 소비자 보호 및 구제방안		
<u>결혼중개업 제도 및 실무</u>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해설	강의	2
	· 상담이론 및 실무		

별표 4호서식의 교육과목, 교육내용, 시간란에 다음과 같이 한다.

교육과목	교육내용	방법	시간
<u>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u>	· 다문화사회로의 전환 및 다문화수용성	선택운동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교재배부)	1
	· 국제결혼 당사국의 결혼관련 법규 및 문화이해·		
소비자 피해예방 및 보호제도	· 소비자 보호관계 법류 해설		1
	· 유형별 피해사례 및 예방		
	· 소비자 보호 및 구제방안		
국제혼인 관련 제도	· 국제결혼 관련 법규 해설		
	·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정착단계 관련 법률 및 제도 해설		1
국제결혼 가족상담	· 성공 및 실패사례		
	· 질의응답		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①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국제결혼 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개사무소가 2 이상인 때에는 중개사무소별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① ----- ----- ----- ----- ----- ----- ----- ----- ----- ----- -----.
1. · 2. · 3. · 4. (생략)	1. · 2. · 3.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수료증 사본	5. <u>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료증 사본</u>
6. 법 제24조의3에 따라 <u>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u> 을 1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u>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재산목록</u>	6. ----- <u>자본금을</u> ----- ----- ----- ----- ----- <u>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명서류)</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6조의2(결혼중개업체의 공시) 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매월 15일까지 전월 말을 기준으로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결혼중개업체 공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특별자치시·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2(결혼중개업체의 공시) ----- ----- ----- ----- ----- -----
1. 결혼중개업체 현황: 업체명, <u>대표자 성명</u> , 소재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명까지로 한다)	1. ----- 현황: <u>상호명</u> , <u>대표자 성명 또는 법인명</u> , <u>신고·등록일</u> , <u>업체상태(영업, 휴업, 폐업)</u> , 소재지----- ----- -----
2. 최근 3년 이내의 <u>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현황</u> : 처분일자 및 처분내용	2. ----- <u>과태료부과,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현황</u> -----

〈 의안 소관 부서명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연 락 처	(02) 2100 - 6370